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그러나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그 취지 내에서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시술이 보장에서 제외되자, 보험회사의 담합 여부를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됨.¹⁾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 보장에서 명시적으로 제외²⁾되자 개원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임.

■ 본고는 최근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변경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담합)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여부를 고찰해 봄.

● 보험약관은 보험업법에 근거한 상품규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금융감독원이 그 내용을 정하는 표준약관은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 목적을 위하여 약관내용을 표준화한 것임.

■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개별 법령의 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1) Doctor's News(2016, 5, 18), “비급여 실손보장 축소... 범정부 논의 착수”.
2) 질병·상해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간주)로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변경함.

필요최소한의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단, 과거 판례³⁾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근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그 취지 내에서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으로 비급여 의료비 비중 증가⁴⁾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손해율을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보임.
- 이번 표준약관 변경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여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⁵⁾과 정책방향이 일치함.

■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따르는 행위와 별도로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음.

- 표준약관 변경 과정에서⁶⁾ 보험회사들이 자신들 사이의 의사교환 내지 합의 내용을 감독당국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표준약관 변경의 주체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약관 변경 이전의 단순한 청원행위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임.
- 미국의 경우도 노어-페닝턴 면책이론에서 경쟁자가 공동으로 법 제정 또는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순수한 청원⁷⁾이나 로비⁸⁾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더라도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함. [kiri](#)

3)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 대법원은 손해보험회사들의 긴급출동 폐지 공동행위가 보험업법에서 인정한 상호협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함.

4) 보험개발원(2016. 2), 「실손의료보험 통계분석결과 및 시사점-비급여 의료비 청구 및 지급실태 중심」, 『CEO Report』, 2016-01.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5. 18),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개최”.

6)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변경 시 보험회사나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음.

7) Eastern Railroad Presidents Conference v. Noerr Motor Freight, Inc., 365 US 127(1961).

8) United Mine Workers v. Pennington, Inc., 381 US 657(1965).